

|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|
| 등록번호 | 기획2603-16C-001 |
| 등록일자 |                |
| 결재일자 | 2026.04.01     |
| 공개구분 | 공개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처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성주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승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김용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김종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|  |  |

## 대학평의원회 회의 개최

### 1. 관련근거

가. 재무.회계 규정 제38조(결산서의 작성.제출 등) ②호

나.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6조(심의사항)

2. 위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에서는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일시 : 2026.04.20.(월), 13:00

나. 장소 : 대학본부 4층 회의실(A402호)

다. 안건

1) 2025학년도 학교교비 세입,세출 결산(안) 자문

2) 2025학년도 유치원회계 세입,세출 결산(안) 자문

라. 사전통지 일자 및 방법

1) 사전통지 일자 : 2026.04.01.(수)

2) 통지 방법 : 문자, 전화 안내 및 홈페이지 공지

붙임 : 관련규정 사본 1부. 끝.

기획조정처 전략운영팀



## 대학평의위원회 규정

|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|
| 규정번호 | VIII-01-B02-02 |
| 개정일자 | 2024.04.29.    |
| 제정일자 | 2007.01.31.    |
| 담당부서 | 전략운영팀          |

제2조(구성 및 자격) ①평의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교원 - 4명
2. 직원 - 3명
3. 조교 - 1명 <신설 2020.11.27.>
4. 학생 - 1명
5. 동문 - 1명 <개정 2020.11.27.>
6.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- 1명

②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한 호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위원은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하되 합리적인 절차로 선정하여야 하며,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른다.<신설 2018.02.01.>

제3조(임기)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②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<개정 2018.12.27.>

제6조(심의사항)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3호, 제6호 내지 제7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. <개정 2020.04.13>

1.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4. <삭제>
5. <삭제>
6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7.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8.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9.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7조(회의) ①평의위원회의 회의는 총장,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1/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.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일 7일 전까지 의원 및 교내구성원에게 의안을 명시하여 사전 통지하고 사전 설명할 수 있다.<개정 2018.01.10.>

②평의위원회는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1/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또는 자문의결한다.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평의원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.<개정 2024.04.29>

③심의 결과 표결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④평의위원회는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며, 의장 및 간사는 회의록에 간인 또는 간서명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04.29>

⑤회의록은 회의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, 전략운영팀(기획조정처)에서 보관한다. 다만,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신설 2018.01.10, 개정 2018.12.27>

1.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2.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3.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

## 재무·회계 규정 개정

|      |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|
| 규정번호 | V-02-B02-04 |
| 개정일자 | 2025.02.19. |
| 제정일자 | 2018.12.27. |
| 담당부서 | 전략운영팀/회계재무팀 |

제38조(결산서의 작성·제출 등) ①대학은 결산서에 대하여 학교법인 감사와 독립된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내·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

②총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과 등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02.19.>